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결과(중국/상하이지사 작성)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가. 중국 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행정사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 공지

지난 4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 공표에 이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행정업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을 공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이 지침에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에 있어 등록 신청 진행 절차, 신청 방식, 서류 심사기준, 비용과 문의/감독 전화번호 등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 중 제12조 중의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평가심사'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설명, 제19조 중 '생산 장소 이전'과 '법정 대표인 변경'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변경'과 '신규 신청'의 상황 구분에 대해 설명하였고, 아울러 등록 및 등록 변경, 연장, 말소 등 업무 신청 시의 필수서류 중의 하나인 신청서 양식(붙임 참조)을 업로드하였다.

등록 신청 진행 절차	식품 유형에 따라 등록 경로 확인 → (주관 당국/신청업체/신청 위탁 대리인 또는 대리업체) 신청서류 제출 → (해관) 신청 접수 → (전문 평가심사팀) 평가심사 → (해관) 평가심사 보고서 심사 → (해관) 등록 허가 여부 결정 → (해관) 등록 허가 여부 결과 통보
신청 방식	유관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총서와 신청 방식, 신청서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상황 외,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변경, 연장, 말소의 신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함
서류 심사기준	작성한 신청서류의 충실성, 진실성, 정확성과 유효성. 신청서류 내용이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검토하고 정한 검사검역 관련 요구 및 중국의 유관 법률,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 등 부합 여부
비용	무료

문의/감독 전화번호	12360
평가심사 내용과 기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매 기구(OIE, IPPC, CAC) 관련 지침,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검토하고 정한 관련 검사검역 요구, 중국 관련 법률,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실시함
생산 장소 이전	대중국 수출 식품의 실제 생산 장소(공장구역)의 이전을 가리킴 관리 인원의 근무 장소 변경은 생산 장소 이전에 속하지 않음
법정 대표인 변경	해외생산업체의 실제 소유자 변경을 가리킴 해외생산업체의 실제 소유자가 변하지 않았으나 실제 소유자를 대표하여 업체 생산 장소(공장구역) 관리 인원 변경 시, 생산업체는 먼저 변경을 신청하고 해관총서는 해당 변경사항이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관리통제에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한 후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

별첨: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행정사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

자료원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1. 11. 17.)

출처 :

<http://online.customs.gov.cn/static/pages/index.html?guidebookUrl=/static/pages/guides/000129012000/000129012000.html&applyUrl=https://cifer.singlewindow.cn&userType=3&systemType=WEB&taskCode=11100000000014154E1000129012000&flag=false>

나. 유제품의 섭취기한 표시 권장에 관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식품의 라벨에는 제조날짜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유제품의 섭취기한을 쉽게 확인하고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업체가 제조한 냉장 필요한 파스퇴르 살균유, 발효유 제품에 제조날짜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기초 상에 섭취기한 날짜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면, "유통기한: XXXX년 XX월 XX(保质期至XXXX年XX月XX日)", "XXXX년 XX월 XX일전 섭취하십시오(请于XXXX年XX月XX日前食(饮)用)"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문구 설명 내용은 패키지 라벨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인쇄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제조과정에서 선명하게 잉크젯 날짜 날인 또는 포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프린트할 수 있다. 표시 내용의 문구, 부호, 숫자 등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자료원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1. 10. 27.)

출처 : http://gkml.samr.gov.cn/nsjg/spscs/202110/t20211027_336153.html

다. 영유아조제분유제품의 라벨 표시를 한 단계 더 규범화에 관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

영유아조제분유제품의 라벨 표시를 한 단계 더 규범화하고 업체의 주체적인 책임 이행 독촉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영유아조제분유제품의 라벨은 식품안전 법률, 법규, 표준과 제품 배합 등록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표시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식별하기 쉬워야 하고, 허위적, 과대 또는 소비자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 도형 또는 절대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0~6개월 영아 적용 조제분유는 함량 강조 표시와 기능 강조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6개월 이상인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 적용 조제분유는 그 필수 성분에 대해 함량 강조 표시와 기능 강조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선택 가능한 성분은 글자의 형식으로 주요 전시면이 아닌 곳에 식품안전 국가 표준에서 허용하는 함량 강조 표시와 기능 강조 표시를 진행할 수 있다.

3. 제품 라벨의 주요 전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규격), 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소비자 오해 소지가 없는 도형을 사용하거나 주요 전시면의 구석에 출원한 상표를 표시해도 되는데 기타 내용의 표시는 불가하다.

4. 제품명에 어떤 동물원성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 그 원유, 분유, 유청분말 등 유단백질 원천은 모두 그 물종 유래이어야 한다. 사용한 동일한 유단백질 원료는 두 가지이상의 동물원성 유래인 것은 여러 동물성 유래 원료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배합에 표시해야 한다.

5. 제품 라벨의 배합 중의 복합원료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어떤 원료가 두 가지이상의 기타 원료로 구성된 복합원료(복합식품첨가제 제외)인 경우, 배합에 복합원료의 명칭을 표시하고 바로 뒤에 복합원료의 조성분을 사용량 감소 순으로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한다.

6. 제품 라벨의 권장 섭취량 또는 수유량(喂哺量)은 과학적인 의거가 있고 서술이 엄밀해야 하며 '반드시', '엄격하게' 등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업계협회 등 사회조직은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제품 라벨 표시와 강조 표시 규범화에 대해 업체를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본 공고 위반 또는 소비자권익을 침범 관련 행위 발견 시, 유선으로 12315 또는 전국 12315 플랫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본 공고 공표일로부터 영유아조제분유제품의 배합 등록 신청은 이에 따라 실시한다. 2023년 2월 22일부터 제조된 제품의 라벨 표시는 본 공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이 전에 제조된 제품은 유통기한 마감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자료원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2021. 11. 12)

출처 : http://gkml.samr.gov.cn/nsjg/tssps/202111/t20211112_336716.html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없음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2021.10월)

발생 일자	HS코드	상품명	중량 (kg)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10월	1902200000	옥수수크림 냉동 떡	414.72	칭다오	1.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2.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송 또는 소각
	1902200000	말기크림 냉동 떡	414.72	칭다오	1.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2.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1902200000	블루베리크림 냉동 떡	414.72	칭다오	1.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2.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2106909090	콜라겐	265	하이커우	1. 화학물질 후코이단 사용은 규정 위반 2. 화학물질 분말한천 사용은 규정 위반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국(2021. 11. 23.)

출처 :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76/wzrjdspxx57/4011043/index.html>

[별첨]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행정사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
(중국 해관 행정사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 000129012000)

1. 사항 명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2. 사항 유형: 행정허가
3. 설정 의거:

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6조 중국 국경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수입식품 수입업체는 중국 수출입 검사검역부서에 서류등록(備案) 되어야 한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생산업체는 중국 수출입 검사검역부서를 거쳐 등록되어야 한다. 이미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공하였거나 자체적인 원인으로 인한 수입식품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를 초래하였다면 중국 수출입 검사검역부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지해야 한다. 중국 수출입 검사검역부서는 정기적으로 서류등록된 해외 수출업체, 대리업체, 수입업체와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업체 리스트를 공지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50조 국가 수출입검사검역부서는 이미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업체 중 더 이상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기간 내에 생산한 식품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시정 후에도 등록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 수출입검사검역부서는 해당 해외 식품생산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공지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 규정》(해관총서 제248호)

제1장 총칙

제1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특별 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對중국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업체(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라고 함)의 등록 관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식품첨가제, 식품 유관 제품 제조, 가공, 저장업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해관총서가 함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2장 등록 조건 및 절차

제5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조건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해관총서 동등 효력(等效性)의 평가, 심사를 통과하였다

(2)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당국의 유효 감독관리 하에 있다

(3) 효과적인 식품안전 위생관리와 방호체계를 세우고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이루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 식품이 중국의 유관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한다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검토하고 정한 유관 검사, 검역의 요구에 부합하다

제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방식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 등록과 업체 신청 등록을 포함한다. 해관총서는 식품 원료의 유래, 제조·가공 공정, 기존 식품안전 수칙, 소비 대상, 섭취방법 등 요소의 분석을 근거로 하고 국제관례와도 결합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방식과 신청서류를 확정한다. 리스크 분석 또는 모 유형 식품의 리스크에 변화가 생긴 증거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식품의 해외생산업체 등록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다음과 같은 식품 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 육류와 육가공품, 케이싱, 수산물, 유(乳)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와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원두와 코코아콩, 특수선식식품(特殊膳食食品), 보건식품.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을 추천한 업체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1) 수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2)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3)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4)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업체가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聲明)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의 심사 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과 방호체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체 공장, 작업장, 냉장·냉동 창고의 평면도 그리고 제조공정 설명 등.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

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업체 등록 신청서
- (2)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명,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등
- (3)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업체의 성명

제10조 업체 등록 신청서 내용은 업체명, 소재 국가(지역), 제조 장소 주소, 법정 대표인, 연락처,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을 신청한 식품 유형, 제조 유형, 제조 능력 등 정보를 포함한다.

제11조 등록 신청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고 유관 국가(지역)가 중국과 등록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쌍방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 기구에 의뢰하여 평가·심사 팀을 모집하여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 및 여러 조합으로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평가·심사를 실시한다. 평가·심사팀은 2명 초과 평가, 심사인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상 평가·심사 업무의 개시를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총서는 평가·심사 상황을 근거로 요구에 부합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등록을 허가하고 중국등록번호(在華注冊編號)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등록이 불가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제1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확정해야 한다.

제17조 해관총서에서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리스트를 함께 대외 공개한다.

제3장 등록관리

제18조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 기구에 의뢰하여 평가·심사 팀을 모집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 요구 지속적 부합 여부 상황에 대해 재심사를 개시한다. 평가·심사팀은 2명 초과 평가·심사 인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등록 유효기간 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정보 변경 시, 등록 신청 경로

로 해관총서에 변경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

- (1)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 도표
 - (2) 정보 변경 유고나 증명 서류
- 해관총서의 평가 결과가 변경 가능한 것은 변경을 허가한다.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인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 중국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

제20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 연장 시, 등록 유효기간 만기 전 3~6개월 내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을 제출한다.

등록 연장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등록 연장 신청서
- (2) 등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다고 승낙하는 성명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업체에 등록 연장을 허가하고 등록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말소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하며 대외 공개한다.

-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 (3) 본 규정의 제5조 제(2)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미 등록된 업체에 유효 감독 관리를 실시하여 이미 등록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에 부합하게 독촉해야 한다.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 시, 신속히 통제 조치를 취하여 등록 요구에 부합할 때까지 시정하고 유관 업체의 對 중국 식품 수출을 중단한다.

제23조 해관총서에서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더 이상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 시, 규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시정 기간 동안 유관 업체의 식품 수입을 한시적 중단한다.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 등록한 업체가 한시적 수입 중단되는 경우, 주관 당국은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는 것을 감독해야 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 보고서와 등록 요구에 부합하다는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등록 신청한 업체가 한시적 수입 중단되는 경우,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해야 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 보고서와 등록 요구에 부합하다는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업체 시정 정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합격 시, 유관 업체의 식품 수입을 회복한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에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대외 공고한다.

- (1) 업체 자체의 원인으로 수입식품 중대 식품 안전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 (2) 對중국 수출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중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형량이 엄중한 경우
- (3) 업체의 식품 안전 위생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對중국 수출 식품이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4) 시정 후에도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허위 서류를 제고, 유관 상황을 숨기는 경우
- (6) 해관총서의 재심사 개시와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
-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매매, 도용하는 경우

제4장 부칙

제25조 국제기구나 對중국 식품 수출하는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전염병 발생을 통보, 또는 유관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과정에서 전염병, 공중 위생사건 등 엄중한 문제 발견 시, 해관총서는 해당 국가(지역)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이 기간에 해당 국가(지역) 유관 식품업체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본 규정 중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에서 식품생산업체 안전 위생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를 말한다.

제27조 본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8조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2012년 3월 22일 舊국가질량감독검검역총국 令제145호에서 반포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 令제243호에 따라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은 폐지된다.

4. 실시 기구: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5. 법정 처리 완결 기한: 없음

6. 승낙 처리 완결 기한: 없음

7. 결과 명칭: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괄로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리스트

8. 결과 양식: 없음

9. 수납 기준: 무료

10. 수납 의거: 없음

11. 신청 조건:

1) 소재 국가(지역)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해관총서의 동등 효력(等效性) 평가, 심사를 통과하였다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당국의 유효 감독관리 하에 있다

3) 효과적인 식품안전 위생관리와 방호체계를 세우고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이루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 식품이 중국의 유관 법률,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한다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검토하고 정한 관련 검사, 검역의 요구에 부합한다

12. 신청 서류: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해야 하는 18개 유형 제품의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목	부수	종이/전자문서	언어요구	비고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등록 추천 서신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등록을 추천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리스트(별첨1)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3	등록을 추천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신청서(별첨2)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4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업체의 부합성 성명(聲明)(별첨3)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6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 보고서,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조건 및 대조 검사 요점(별첨4)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목	부수	종이/전자문서	언어요구	비고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변경 신청 서신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사항 변경 정보 대조표(별첨5)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3	변경 정보 관련 증명 서류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3) 등록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목	부수	종이/전자문서	언어요구	비고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등록 연장 추천 서신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등록 연장을 추천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리스트(별첨6)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3	등록 연장을 추천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신청서(별첨7)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4	등록 연장을 추천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부합성 성명(聲明)(별첨8)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4) 등록 말소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목	부수	종이/전자문서	언어요구	비고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말소 신청 서신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말소 리스트(별첨9)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3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말소 신청서(별첨10)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18개 유형 제품 이외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목	부수	종이/전자문서	언어요구	비고
1	자체 신청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신청서(별첨11)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업체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3	자체 신청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부합성 성명(聲明)(별첨12)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목	부수	종이/전자문서	언어요구	비고
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표(별첨5)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변경 정보 관련 증명 서류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3) 등록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목	부수	종이/전자문서	언어요구	비고
1	자체 신청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연장 신청서(별첨13)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2	자체 신청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연장 부합성 성명(聲明)(별첨14)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4) 등록 말소 신청 시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목	부수	종이/전자문서	언어요구	비고
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말소 신청서(별첨10)	1	종이/전자문서	중문/영문	

13. 진행 절차:

1) 등록 신청, 접수, 평가 심사와 결정

(1) 신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변경, 연장과 말소 신청 신청방식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과 업체 신청 두 가지가 있다.

18개 유형 제품(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벌꿀제품, 알 및 알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지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식품, 견과와 씨앗류, 견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원두와 코코아콩, 특수선식식품과 보건식품)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업체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된 후 해관총서에 추천 및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18개 유형 제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2) 제출

관련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총서와 신청방식, 신청 서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상황 외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변경, 연장, 말소 신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3) 해관총서 식품국은 신청 서류를 받은 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처리한다:

- ① 요구에 부합하는 서류는 접수한다
- ②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일 경우, 신청 서류를 받은 20개 근무일 내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한꺼번에 보정해야 하는 전부 내용을 고지한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요구에 따라 등록 관리 실시에 속하지 않은 것은 접수하는 않은 동시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고지한다.

④ 등록을 신청한 해외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발견하였다면 접수하지 않은 동시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고지한다. 이미 등록된 해외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발견하였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 제248호) 제24조 관련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해관총서 식품국은 서신, 팩스 문서, 전자메일 또는 정보화시스템 등 형식을 통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접수 상황 피드백을 전달한다.

(4) 평가 심사

리스크 분석 및 실제 작업 수요에 따라 해관총서 식품국은 평가심사팀을 조직하여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 및 그 조합을 통해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평가, 심사를 실시하는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평가, 심사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서면검사: 해관총서는 평가심사팀을 조직하여 제출한 신청 서류에 대해 심사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해외생산업체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신청 서류 상황에 따라 해관총서는 신청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 또는 해외생산업체에 부족한 정보 또는 서류에 대해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2. 영상검사: 해관총서는 평가심사팀을 조직하여 인터넷 영상연결방식을 통해 업체

의 식품안전위생관리체계 및 식품안전 위생상황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영상검사를 받는 업체 및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영상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영상검사 중 발견한 관련 문제에 대해 해관총서는 영상검사를 받는 업체 및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시정 및 해당 시정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현장검사: 해관총서는 평가심사팀을 조직하여 등록을 신청한 해외생산업체 해외현장으로 파견한다.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관리체계 및 식품안전 위생상황 등에 대해 검사, 검증을 실시한다. 현장검사를 받는 업체 및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현장검사 진행 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검사 중 유관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검사를 받은 업체 및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 시정 및 해당 시정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 심사의 내용과 표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매 기구(OIE, IPPC, CAC) 관련 지침,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검토하고 정한 관련 검사검역 요구, 중국 관련 법률,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해관총서 식품국은 평가심사팀을 조직하고 영상검사, 현장검사를 개시하고 리스크 분석 및 국제관례에 따라 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과 사전에 소통하고 협상한다.

(5) 심사

해관총서 식품국은 평가심사팀 업무보고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6) 등록 허가

해관총서는 평가, 심사 상황에 따라 요구에 부합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등록을 허가하고 중국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한다.

해관총서 식품국은 서신, 팩스 문서, 전자메일 또는 정보화시스템 등 형식을 통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한다.

2) 등록 사항 변경

이미 등록된 해외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서 신청 경로에 따라 본 지침 제12조 요구에 의거하여 해당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평가심사 결과, 변경사항이 해외업체 식품안전 위생관리통제와 연관되지 않은 것(예를 들면, 업체명 변경 등)은 변경 요구에 부합하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변경을 허가한다. 평가심사 결과, 변경 관련 조정이 해외업체 식품안전 위생관리통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신청 경로에 따라 신규 등록 신청 제출을 통보한다. 신규 등록 신청이 통과된 후, 기존 중국등록번호(在華注冊編號)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등록자격도 말소된다.

업체의 생산 장소 이전, 법정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에서 수여한 등록번호 변경 등 상황은, 신규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 등록 신청이 통과된 후, 기존

중국등록번호(在華注冊編號)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등록자격도 말소된다.

생산 장소 이전은 대중국 수출 식품의 실제 생산 장소(공장구역)의 이전을 가리킨다. 관리인원 근무 장소 변경은 생산 장소 이전에 속하지 않는다. 법정대표자 변경은 해외업체는 실제 소유자 변경을 가리킨다. 해외업체의 실제 소유자가 변하지 않았으나 실제 소유자를 대표하여 업체 생산 장소(공장구역) 관리인원 변경 시, 생산업체는 먼저 변경을 신청하고 해관총서는 해당 변경사항이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관리통제에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한 후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3) 등록 연장

이미 등록된 해외업체는 그 등록 유효기간 만기 3~6개월 전,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서 신청 경로에 따라 본 지침 제12조 요구에 의거하여 해당 등록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평가심사 결과, 등록 연장 요구에 부합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 연장을 허가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한다. 업체의 기존 중국등록번호는 유효기한 만기 후 자동으로 실효되고 등록 자격은 말소된다.

해관총서 식품국은 서신, 팩스 문서, 전자메일 또는 정보화시스템 등 형식을 통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한다.

4) 등록 말소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그 자격 말소 신청 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서 신청 경로에 따라 본 지침 제12조 요구에 의거하여 해당 말소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해관총서 식품국은 말소 요구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말소를 허가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하며 공지한다.

14. 진행 형식: 유관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총서와 신청방식, 신청 서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상황 외,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변경, 연장, 말소의 신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15. 현장 방문 횟수: 0

16. 심사 기준: 작성한 신청 서류의 완성성, 진실성, 정확성과 유효성. 신청 서류 내용이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검토하고 정한 검사검역 관련 요구 및 중국의 유관 법률,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 등 부합 여부.

17. 일괄 처리 범위: 없음

18. 예약처리: 불필요

19. 온라인 결재: 불필요

20. 물류, 택배: 불필요

21. 처리 주소:

1) 신청 서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북경시건국문내대가6호 중국인민공화국 해

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우현번호:100005(北京市建国门内大街6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进出口食品安全局 100005)로 발송

2) 온라인: <https://cifer.singlewindow.cn>, 또는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www.singlewindow.cn) 표준버전에 접속

22. 처리 시간:

1) 업체 신청 시간:

온라인: 24시간

외교 경로: 법정 근무일 8:00-17:00

2) 해관 심사시간: 법정 근무일 8:00-17:00

23. 문의 전화: 12360 해관 서비스

24. 감독 전화: 12360 해관 서비스

끝.